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22 선고 2020가단2149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20. 9. 8.

판결 선고2020. 9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,252,052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,375,966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5. 8. 10. 피고 C, D,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, '피보험자 (주)F, 보험금액 500,000,000원, 보험기간 2005. 8. 9. 부터 2006. 8. 8.까지'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주F에 대한 이동통신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이동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.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,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즉시 지급보험금을 변상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.

나. (주)F은 원고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500,000,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09. 6. 12. (주)F에게 보험금 500,000,000원을 지급한 후 그 구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004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0. 11. 29. '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6. 13.부터 2009. 8. 4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금 채권'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원금 500,000,000원 및 지연손해금 460,211,614원 중 125,959,562원을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은 지연손해금 334,252,052원이 남아 있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. 6. 11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무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

판결금 등에 따른 구상채권 중 미지급 지연손해금 334,252,0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연주